

[별지 제28호서식] <개정 2013.3.23>

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					
신청인	상 호		대표자		(인)
	영업소소재지		법인등록번호		
			사업자등록번호		
기존 실적신고 업종	실적전환 희망업종	연도	실적전환 희망금액 (직접시공금액)	건수	
토목공사업 (토목건축공사업중 토목실적)		2007			
		2006			
		2005			
소 계					
		2007			
		2006			
		2005			
소 계					
건축공사업 (토목건축공사업중 건축실적)		2007			
		2006			
		2005			
소 계					
		2007			
		2006			
		2005			
소 계					
조경공사업		2007			
		2006			
		2005			
소 계					
		2007			
		2006			
		2005			
합 계					
법률 제8477호 「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」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 부령 제598호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.					
			년	월	일
		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	
국토교통부장관 귀하					
첨부서류					
1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					
2.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	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